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1. . . (제 회)	

도서개발촉진법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전해철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1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도서개발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도서개발촉진법 개정('20.12.22.)에 따라 “도서(島嶼)”를 “섬”으로 바꾸어 우리말 사용을 장려하고, 법 제15조에서 시행령으로 위임된 사항(한국섬진흥원 설립 및 운영, 사업내용)을 마련함.

섬 관광활성화 정책관련 부처 협업체계를 마련 위해 섬발전심의위원회 및 섬발전실무위원회 정부위원으로 문화체육관광부를 추가함.

섬 관련 다양한 민간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해 섬발전실무위원회에 민간위원을 위촉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“도서(島嶼)”를 “섬”으로 바꾸어 우리말 사용을 장려하고, 제명을 「섬 발전 촉진법 시행령」으로 함.

나. 섬발전심의위원회 및 섬발전실무위원회에 문화체육관광부 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함.(안 제15조, 제16조)

다. 섬발전실무위원회에 민간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6조).

라. ‘한국섬진흥원’ 운영(법 제15조 제3항) 관련 시행령 위임사항을 마련하고자 함.(안 제18조)

마. ‘한국섬진흥원’ 사업내용(법 제15조 제4항 제8호) 관련 시행령 위임사항을 마련하고자 함.(안 제19조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입법예고전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도서개발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도서개발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도서개발 촉진법 시행령”을 “섬 발전 촉진법 시행령”으로 한다.

제1조 중 “「도서개발 촉진법」”을 “「섬 발전 촉진법」”으로 한다.

제2조 중 “「도서개발 촉진법」”을 “「섬 발전 촉진법」”으로 한다.

제3조제1항 본문 중 “지정도서”를 “지정섬으”로, “도서는”을 “섬은”으로, “도서로”를 “섬으로”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“도서라도”를 “섬이라도”로, “도서를 지정도서”를 “섬을 지정섬으”로 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도서개발심의위원회(이하 “도서개발심의위원회”)”를 “섬 발전심의위원회(이하 “섬발전심의위원회”)”로 한다.

제10조제1항제6호 중 “지정도서를”을 “지정섬을”로 한다.

제15조의 제목 중 “도서개발심의위원회”를 “섬발전심의위원회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도서개발심의위원회는 기획재정부차관·교육부차관·국방부차관·행정안전부차관·농림축산식품부차관·보건복지부차관·환경부차관·국토교통부차관·해양수산부차관·산림청장”을 “섬발전심의위원회는 기획재정부차관·교육부차관·국방부차관·행정안전부차관·문화체육관광부차관·농림축산식품부차관·보건복지부차관·환경부차관·국토교통부차관·해양수산부차관·산림청장”으로 하며, 같은

조 제2항 중 “도서개발심의위원회”를 “섬발전심의위원회”로, “도서개발심의위원회를”을 “섬발전심의위원회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“도서개발심의위원회”를 “섬발전심의위원회”로 한다.

제16조의 제목 중 “도서개발실무위원회”를 “섬발전실무위원회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도서개발심의위원회”를 “섬발전심의위원회”로, “도서개발심의위원회에 도서개발실무위원회”를 “섬발전심의위원회에 섬발전실무위원회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“기획재정부·교육부·국방부·행정안전부·농림축산식품부·보건복지부·환경부·국토교통부·해양수산부”를 “기획재정부·교육부·국방부·행정안전부·문화체육관광부·농림축산식품부·보건복지부·환경부·국토교통부·해양수산부”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도서를”을 “섬을”로, “도서개발심의위원회”를 “섬발전심의위원회”로 하며,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섬 발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, 섬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전문가 중 위원장이 임명하는 사람

제17조제1항 및 제2항 중 “도서개발심의위원회”를 각각 “섬발전심의위원회”로 한다.

제18조 및 제1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8조(한국섬진흥원의 설립·운영) ①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한국섬진흥원(이하 “진흥원”이라 한다)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되,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명칭, 목적, 소재지
2.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
3. 이사회에 관한 사항
4. 사업에 관한 사항
5.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
6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
② 진흥원의 이사장은 이사회의 추천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임명한다.

③ 진흥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섬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.

제19조(한국섬진흥원의 사업) 법 제15조제4항제8호에서 “대통령으로 정하는 사항”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섬 지역의 인구감소 대책 등 섬·육지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발전 방안 연구
2. 섬 가치 제고 및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국가·지방자치단체·공공기관·민간이 추진하는 학술대회·행사 등 사업 수행
3. 섬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통계조사 및 관리, 정보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
4. 그 밖에 섬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

제3조 제목, 제3조제1항, 제3조제2항 전단, 제4조 제목, 제4조제1항, 제4

조제2항, 제4조제3항, 제5조 제목, 제5조 제목 외의 부분, 제9조제1항제1호,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0조 제목 외의 부분 중 “도서”를 각각 “섬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도서개발 촉진법 시행령</u>	<u>섬 발전 촉진법 시행령</u>
제1조(목적) 이 영은 「 <u>도서개발 촉진법</u> 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「 <u>섬 발전 촉진법</u> 」----- ----- -----.
제2조(육지와 연결된 기간) 「 <u>도서개발 촉진법</u> 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1항제2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”이란 10년을 말한다.	제2조(육지와 연결된 기간) 「 <u>섬 발전 촉진법</u> 」----- ----- -----.
제3조(지정도서의 지정기준 등) ①법 제4조에 따라 <u>지정도서</u> 로 지정할 수 있는 <u>도서</u> 는 10명 이상의 인구가 상시 거주하는 <u>도서</u> 로 한다. 다만, 10명 미만의 인구가 상시 거주하는 <u>도서</u> 라도 도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<u>도서를 지정도서</u> 로 지정할 수 있다. ② (생략)	제3조(지정섬의 지정기준 등) ① ----- <u>지점섬</u> ----- ----- <u>섬</u> ----- -----섬으로----- 로--. ----- ----- <u>섬이라도</u> ----- ----- ----- <u>섬을 지점섬</u> ----- --.
제7조(협의) ①행정안전부장관은	제7조(협의) ①-----

법 제7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확정하려는 때에는 법 제14조에 따른 도서개발심의위원회(이하 “도서개발심의위원회”라 한다)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
②·③ (생략)

제10조(연도별 사업계획의 확정)

①관계 시·도지사는 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다음연도 사업계획(이하 “연도별 사업계획”이라 한다)을 작성,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1월말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~ 5. (생략)

6. 지정도서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현황

② (생략)

제15조(도서개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

①도서개발심의위원회는 기획재정부차관·교육부차관·국방부차관·행정안전부차관·농림축산식품부차관·보건복지부차관·환경부차관·

--- 섬발전심의위원회(이하 “섬발전심의위원회”-----

---.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10조(연도별 사업계획의 확정)

①-----

-----.

1. ~ 5. (현행과 같음)

6. 지정섬을 -----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5조(섬발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

①섬발전심의위원회는 기획재정부차관·교육부차관·국방부차관·행정안전부차관·문화체육관광부차관·농림축산식품부차관·보건복지부차관·

국토교통부차관 · 해양수산부차관 · 산림청장 또는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.

②위원장은 도서개발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도서개발심의위원회를 대표한다.

③도서개발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사항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

④ · ⑤ (생략)

제16조(도서개발실무위원회) ①도서개발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도서개발심의위원회에 도서개발실무위원회(이하 “실무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· ③ (생략)

④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.

1. 기획재정부 · 교육부 · 국방부 · 행정안전부 · 농림축산식품부 · 보건복지부 · 환경부 · 국

환경부차관 · 국토교통부차관 · 해양수산부차관 · 산림청장 ---

-----.

②----- 섬발전심의위원회----- 섬발전심의위원회를 -----.

③섬발전심의위원회-----

-. -----
-----.

④ · ⑤ (현행과 같음)

제16조(섬발전실무위원회) ①섬발전심의위원회-----

섬발전심의위원회에 섬발전실무위원회-----
-----.

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
④-----
-----.

1. 기획재정부 · 교육부 · 국방부 · 행정안전부 · 문화체육관광부 · 농림축산식품부 · 보건복

토교통부·해양수산부 및 산림청의 장이 소속3급 또는 4급공무원(담당관 또는 과장의 보직이 있는 공무원을 말한다)중에서 각각 지정하는 사람

2. 도서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도서개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하는 사람

<신 설>

⑤ (생략)

제17조(간사 및 서기) ①도서개발심의위원회와 실무위원회에 각각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. ②간사 및 서기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도서개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.

<신 설>

지부·환경부·국토교통부·해양수산부 -----

--

2. 섬을 -----
----- 섬발전심의위원회-----

3. 섬 발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, 섬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전문가 중 위원장이 임명하는 사람

⑤ (현행과 같음)

제17조(간사 및 서기) ①섬발전심의위원회-----
-----.

②-----
----- 섬발전심의위원회-----.

제18조(한국섬진흥원의 설립·운영) ①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한국섬진흥원(이하 “진흥원”이라 한다)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되, 다

<신 설>

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명칭, 목적, 소재지
2.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
3. 이사회에 관한 사항
4. 사업에 관한 사항
5.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
6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
② 진흥원의 이사장은 이사회
추천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임
명한다.

③ 진흥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
체 또는 연구기관에 섬 관련 자
료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
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
유가 없으면 이를 제공하여야
한다.

제19조(한국섬진흥원의 사업) 법
제15조제4항제8호에서 “대통령
으로 정하는 사항”은 다음 각
호와 같다.

1. 섬 지역의 인구감소 대책 등
섬·육지간 지역균형발전을
위한 발전방안 연구
2. 섬 가치 제고 및 관광활성화
를 위하여 국가·지방자치단

	<u>체 · 공공기관 · 민간이 추진하</u> <u>는 학술대회 · 행사 등 사업</u> <u>수행</u> 3. <u>섬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</u> <u>적인 통계조사 및 관리, 정보</u> <u>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</u> 4. <u>그 밖에 섬 발전을 위해 필요</u> <u>하다고 인정되는 사업</u>
--	--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행정안전부 지역균형발전과	
연 락 처	(044) 205 - 3520